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전문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여부 []기술사 []기능장 []해당 없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	등록증 발급	→	공 고
신청인		산업통상부 또는 수탁기관		산업통상부 또는 수탁기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